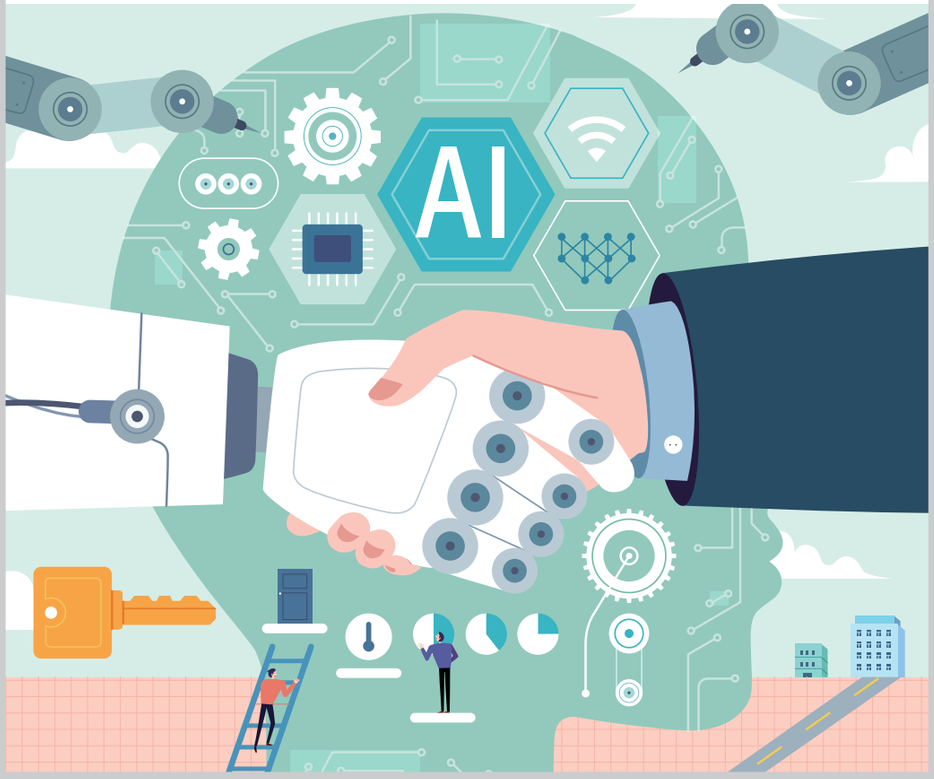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의원발의 법안

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Ⅰ | 입안 배경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 신산업 분야는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빈번한 출시와 기술의 변화속도에 맞추어 관련 규제 법령의 신속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의 사항은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려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입법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개선의 연장선에서, 법령상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신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 · 혁신적 규제시스템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특히 지난 2017. 11. 8.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081)과 2017. 11. 10. 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의안번호 제2010140)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융합[2)] 또는 정보통신융합[3)] 등의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들로, 이들 법안에서는 최근 영국 등에서 신산업 분야에 도입하고 있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4)]의 개념의 입법화하고 있다.



1)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0026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5286호) 등 관련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음.

2)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함(「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

3)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함(「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4)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통(sandbox)에서 착안한 개념으로, 영국에서 금융산업의 핀테크 기술 도입 및 실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험의 장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

Ⅱ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사전허용 · 사후규제의 원칙 규정(안 제3조의2)

현행법 제3조제7항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허용의 기본원칙 내용을 독립된 조로 확장하여,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만 신규 기술 · 서비스 사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허용 · 사후규제'의 원칙을 명시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의무를 부여함.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의 신속확인 제도(안 제36조)

현행법에서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기술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신규 기술 ·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허가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5]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처리 절차가 임시허가 제도 활용을 위한 사전절차로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신규 기술 ·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기술 · 서비스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의 필요 여부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괄 확인 서비스로서의 신속확인 제도를 규정함.

3.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괄처리제도 도입 (안 제36조의2 신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허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에 그

5)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내용 등을 통보하고, 허가 필요여부 등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회신을 받아 신청인에게 통지해주거나, 임시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주도록 하고 있음

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허가 등을 위한 심사 절차를 속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허가 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심사개시 사실, 심사기간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4. 임시허가 제도의 개선(안 제37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에 대한 허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상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신규 기술 ·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며, 관계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의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신규 기술 · 서비스를 시장에서 실험 · 검증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일시적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결과를 회신받아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Ⅲ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주요내용

1. '규제샌드박스' 등의 정의(안 제2조)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이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등에 의해 기존 산업 등에 인공지능, 빅데

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이 융합하여 사회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등이 미래형 신산업 창출 및 산업혁신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상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업 허가 · 승인 · 인증 등을 부여하는 것을 “규제 샌드박스”로 정의함.

2. 신산업 창출 및 산업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규제 특례 등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

3. 산업혁신위원회의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미래형 신산업의 창출 및 산업혁신에 관한 정부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 · 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 · 평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함

4.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안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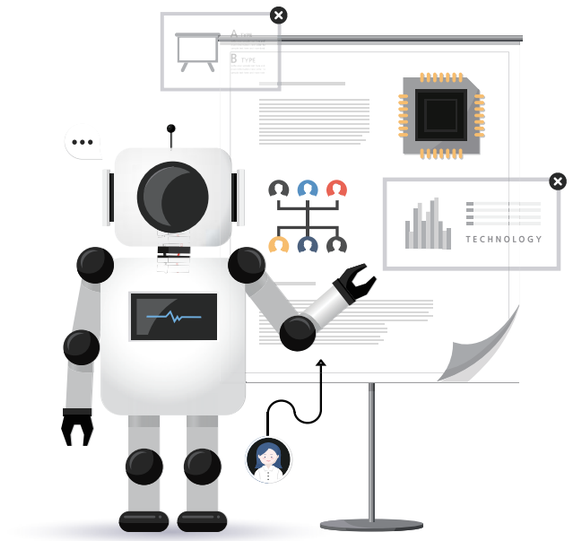
미래형 신산업 창출 및 산업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등이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의 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도록 함.

5. 미래형 신산업 창출 및 산업혁신을 위한 지원 등(제17조 등)

정부는 산업 ·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교육 · 훈련 프로그램 개설 등 인력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계 ·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며,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Ⅳ | 입법전망

위 법안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의 탄력적인 규제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두 법안은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등 서로 중첩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 법안 모두 ‘규제샌드박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양 법안의 적용관계 및 관계부처 간 합리적인 업무분담과 일관성 있는 규제혁신 제도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각 법안의 새로운 규제 특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관련 제도[6]와의 관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과 특례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6)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범사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등